오픈스페이스 사용 규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칙은 KAIST 학생 문화 발전과 장영신 학생회관(이하 '신학생회관'이라 한다)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학생회관 내 오픈스페이스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간 목적)

오픈스페이스는 전시, 공연 등 기타 열린 공간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.

제3조(공간 구성)

오픈스페이스는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.

- 1. 옥상
- 2. 3층 로비
- 3. 커뮤니티 마당
- 4. 전시계단
- 5. 2층 로비
- 6. 미디어스페이스
- 7. 1층 로비
- 8. 모임터

제4조(대상)

① 오픈스페이스의 사용 대상은 학내 구성원으로 한다.

제5조(사용)

- ① 사용은 예약사용과 상시 사용으로 구분한다.
- ② 오픈스페이스는 24시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나, 행사를 진행할 경우 무조건 예약 사용해야 한다.
 - ③ 예약 사용은 상시예약이 있다.
 - ④ 상시예약은 본회의 예약 시스템(scspace.kaist.ac.kr)을 통해 할 수 있다.
- ⑤ 상시예약은 사용일의 45일 전 21시부터 7일 전 21시까지 받으며, 최대 14일까지 사용할수 있다.
- ⑥ 오픈스페이스는 본회의 예약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다. 예약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, 공간위원은 학우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. 행사 완료 후, 학생회관 사용 규칙을 안내한다.
 - ⑦ 모든 예약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⑧ 외부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오픈스페이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.
 - ⑨ 예약자는 예약에 대한 본회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.
- ⑩ 예약자는 본회에서 구비한 다양한 전시 도구들을 물품대여확인서를 작성한 후 대여하여 전시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① 소음이 있는 예약의 경우, 소음양해서를 작성하여 예약 전날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소음이 있는 예약임에도 소음양해서를 예약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예약이 취소된다.
 - ② 사전 신청자를 받는 닫힌 행사일 경우 예약을 받지 않는다.

- ③ 옥상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옥상에서의 음주를 금한다.
 - 2. 옥상에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A) 3층 로비, 2층 로비, 1층 로비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로비는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 - 2. 예약시 사람들이 사람들이 단체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한다.
- ⑤ 커뮤니티마당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커뮤니티마당은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- ⑩ 전시계단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전시계단은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 - 2. 전시에 필요한 경우, 본회와 협의한 후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다.
 - 3. 계단이므로 안전사고를 일으킬 만한 예약은 승인하지 않는다.
- ⑩ 미디어스페이스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미디어스페이스는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예약 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.
 - 2. 미디어스페이스의 TV를 예약에 사용할 경우, 본회와 협의가 필요하다.
 - 3. 미디어스페이스의 CD플레이어의 경우, 아래의 목을 따른다.
 - a. CD플레이어는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.
 - b. CD플레이어는 예약이 불가능하고, 미디어 스페이스를 예약한 경우 타 학우의 CD플레이어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.
- ⑱ 모임터의 경우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간단한 음료 및 스낵을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.
 - 2. 30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본회에 의해서 철거될 수 있다.

제6조(보증금)

- ① 보증금은 아래의 호를 따른다.
 - 1. 음식, 주류 미 반입: 10만원
 - 2. 음식, 주류 반입: 50만원
- ② 보증금은 예약 전날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보증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예약이 취소된다.
- ③ 보증금은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한다.
 - 1. 시설물 파손
 - 2. 뒷정리 미흡
- ④ 보증금은 원상복구를 위한 금액만큼 차감되고, 해당 보증금보다 큰 액수가 소모된 경우 보증금만큼 차감한다.
 - ⑤ 보증금은 예약종료 후 사후점검을 통해 점검 후 반환된다.

제7조(페널티 제도)

- ①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부과한다.
 - 1. 통행로 미확보
 - 2. 사용 시간 및 정리 시간 미준수
 - 3. 전시 중 해당공간 무단 게시물 게시
 - 4. 협의 사항 미준수
- ②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부과한다.
 - 1. 미예약 사용
 - 2. 소음양해서 미제출, 보증금 미입금 등 예약 취소자의 예약 사용
- ③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, 주의를 부과하고 장영신학생회관 공간사용규칙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.
 - ④ 주의 2회가 누적된 경우, 경고 1회로 대체가 된다.
 - ⑤ 경고 1회가 누적된 경우, 30일 동안 해당 공간의 예약이 불가능하다.
 - ⑥ 경고 2회가 누적된 경우, 90일 동안 해당 공간의 예약이 불가능하다.
 - ⑦ 경고 및 주의는 매년 봄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초기화된다.